

#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관련 특정감사 결과

## I. 감사 개요

### □ 감사 대상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세금납부 절차

### □ 기간/인원

- 2014. 11. 21.(금) ~ 11. 24.(월) / 감사담당관실 2명

### □ 감사 중점사항

- 세금관련 가집행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

## II. 세금납부 경과

- 2008. 6. 20. 취득(신축)한 ○○○○극장(8,585.08㎡ 중 5,273.78㎡)에 대하여, 2009. 10. 15. 증축한 ◎◎◎◎극장 연습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8조1)에 따라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등 면제
- 2010. 1. 1.부터 ▲▲▲▲에 위탁운영
- 2013. 7.12. ㉟구청에서 직접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(2010~2012) 등 3,845,763,730원 부과
- 2013. 8. 9. 부과 세금 3,845,763,730원 중 사무실 등 용도 사용분 5,104,710원을 제외한 3,840,659,02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
- 2014. 2. 3. 조세심판결정 통지

1) 구 지방세법 제288조(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) ② ~ 「민법」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~ 문화예술단체 ~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,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. 다만, ~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

- 573,765,410원(재산세 478,137,870원, 지방교육세 95,627,540원)을 제외한 부과처분 취소
- 2014. 2. 27. 573,765,410원에서 기납부세액 환급액 69,746,390원을 제외한 504,019,020원 일반수용비에서 납부<sup>2)</sup>
- 2014. 9. 1. △△세무서에서 추징된 재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 443,085,850원 부과 / 2014. 9. 25. 가지급금으로 납부<sup>3)</sup>
- 2014. 9. 30. 일반수용비에서 2014. 2. 27. 납부한 재산세 등 504,019,020원을 가지급금<sup>4)</sup>으로,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14. 2. 17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91,687,170원을 일반수용비로 대체

### Ⅲ. 감사 결과

#### □ 지적 사항

-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없이 947,107,870원을 가지급금으로 집행, 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’을 위반

#### □ 처분 요구

- [주의]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고, 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

2) 세목조정이나 기금집행계획변경 없이 ‘공공요금 및 제세’가 아닌 ‘일반수용비’ 세목에서 납부

3) 여유자금(통화금융기관예치금)으로 지급한 것을 의미함

4)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세금은 종부세 443,085,850원을 포함하여 총 947,107,870원임